

인천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합64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2. 10 선고 2021나123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합64876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진

변 론 종 결 2021. 3. 2.

판 결 선 고 2021. 3.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82,5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2,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변경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 체결일	보증번호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
1	2011. 8. 26.	D	280,500,000원	2012. 8. 24.
2	2011. 8. 26.	E	714,000,000원	2012. 8. 24.
3	2014. 8. 12.	F	450,000,000원	2015. 8. 1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변경되어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8. 16.로,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8. 9.로 각 최종 연장되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 실행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670,000,000원을 대출(이하 아래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대출기한
1	2011. 8. 30.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	330,000,000원	2019. 8. 16.
2	2011. 8. 30.	무역어음한도대출	840,000,000원	2019. 8. 16.
3	2014. 8. 13.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	500,000,000원	2019. 8. 9.

다.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B은 2019. 2. 11. 그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B은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0. 2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합계 1,445,093,5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9. 11.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032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비용 892,51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한 2019. 10.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합계 4,813,28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912,96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2,280,320원 +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1,6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2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합계 1,445,093,58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와 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과 4,813,280원의 추가보증료 채권을 취득하였고, 2019.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892,510원의 상환채권(이하 위 합계 1,450,799,374원 상당의 채권을 통틀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9. 7. 12.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지급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③ 그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무렵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G은행에 대한 68,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B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고, B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B의 채무초과 상태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0. 11. 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부자지간인 점, ② 피고는 B에게 2019. 2. 11. 30,000,000원, 2019. 2. 27. 99,674,456원, 합계 129,674,456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1) 갑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의 2006. 9. 11.자 근저당권과 2015. 3. 9.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27.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 2)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G에 대한 2020. 10.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93,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10,435,000원(= 2006. 9. 11.자 근저당권 124,387,000원 + 2015. 3. 9.자 근저당권 186,04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82,565,000원(= 593,000,000원 - 310,435,000원)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구상금 등 채권 합계 1,450,799,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 3)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인 282,56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2,5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김성대, 판사 박건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인천 연수구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라브, 평슬라브 16층 아파트

1층 668.242㎡

2층 664.154㎡

3층 664.154㎡

4층 664.154㎡

5층 664.154㎡

6층 658.106㎡

7층 658.106㎡

8층 658.106㎡

9층 658.106㎡

10층 658.106㎡

11층 658.106㎡

12층 658.106㎡

13층 658.106㎡

14층 658.106㎡

15층 658.106㎡

16층 658.10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 연수구 I 대 4863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4.50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8631.3분의 108.212. 끝.